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7 선고 2022가단73911 판결 [계약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이수영, 임하린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2. 6.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년

11월경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토지 지상 소매점 신축공사를 대금 5억 5,000만 원에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20. 11. 19.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2. 5. 26.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달리
피고가 시공한 부분도 없는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2020.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6. 7.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형우

청 구 원 인

1.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

○ 원고는 2020. 11.경 피고 회사와 안산시 단원구 C 답 9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 지상에 소매점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D 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¹⁾. 그러나 D 명의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원고가 D 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피고 회사와 위 토지 지상에 소매점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0. 11. 19. 피고 회사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 도급계약의 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의무

○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공사의 착수에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1) 처음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필요에 따라 공사대금을 777,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실제 공사대금은 550,000,000원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계약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20.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